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,

안녕하십니까?

더불어민주당 서윤기 의원입니다.

□ 「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.

□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□ 지방의원의 의정역량이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측면에서 의원 교육연수 시스템과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

□ 그래서 우리 의회는 2015년 초 의원의 각종 교육연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「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)를 제정해

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.

□ 본 개정안은 의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
의회 내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·시행하고,
이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해 ‘의원역량개발센터’와
관련 전문가를 두는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고자 제안됐습니다.

□ 구체적으로 본 개정안은
- 조례 제명을 ‘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등에 관한
조례’로 변경해 조례 내용을 포괄하고,
- 의회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를 개발·시행하고,
이를 관리·운영하는 ‘의원역량개발센터’와 관련 전문가를
둘 수 있도록 하며,
- 위 내용을 4년 단위 교육연수 기본계획에 포함하고,
- 교육연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의 기능을 ‘자문’기능에서
‘심의·자문’기능으로 조정하는 한편 위원회 구성과 회의 운영
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.

□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
참고해 주시기 바라며,
□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,

개정안의 취지를 살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